

재무위원회 규정

제정 2017년 11월 30일
개정 2021년 07월 01일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 재무위원회(이하 '재무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1.본조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재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재무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2장 구 성

제4조 (구성)

재무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최고임원인 사내이사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 ① 재무위원회 위원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 ② 재무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 ①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재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개최시기)

재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재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재무위원회의 소집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무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재무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재무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재무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무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재무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부의사항)

- ① 재무에 관한 사항

1. 이사회가 승인한 연간 차입 한도 내의 사채발행 및 건당 200억원

이상의 장기

차입

② 기타 사항

1.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 받은 경우

제13조 (이사에 대한 통지)

재무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재의결)

제13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재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재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① 재무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 ① 재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1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